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1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맹성규·박성준·이용호

박상혁 • 야진비 • 강민정

한병도 · 김영배 · 이은주

황운하 • 양정숙 • 김철민

배진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휴원하려는 경우 보유생물 관리계획과 향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소규모 동물원이나 소위 동물카페 등이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의 사유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유생물에 대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을 보전·연구하고"를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 ·연구하며"로, "제공하며"를 "제공하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휴·폐원"을 "휴·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자금난 또는 인력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휴·폐원을 하려는 경우 그 휴·폐원신고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보유 생물의 보호나 보존을 위하여 보유 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자가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양도하지 아니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생물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원·폐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원 또는 폐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제1조(목적)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 • 연구하고 그 생태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 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 • 연구하며-----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 -----제공하고-----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등) ① ~ ④ (현 및 휴 · 폐원) ① ~ ④ (생 략) 행과 같음)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 <신 설> 하는 자가 자금난 또는 인력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휴 · 폐원을 하려는 경우 그 휴 · 폐원신고 이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보유 생물의 보호나 보존을 위 하여 보유 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 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u>⑤</u> (생 략) 제12조(조치명령) ① (생 략)

<신 설>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제12조(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자가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양도하지 아니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동물원 또는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생물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3</u>	
	<u>제1항 및 제2항</u>	-
		-
제	16조(벌칙) ① <u>다음 각 호</u>	-
		-
		-
		-

<u><신 설></u>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u><신 설></u>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
	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